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전문위원 황병언

I. 게임물범죄 개관

-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의 만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후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로 대규모 게임장 운영 사례는 감소하였으나, 지능적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도박·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의 자금원으로 이용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양형 기준 설정이 필요함
- 다만 사행행위, 게임물 관련 범죄는 그 처벌규정이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고, 각 처벌규정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도 다소 상이하여 대상범위 설정, 범죄유형의 분류, 권고형량범위 및 양형인자 설정 등에 있어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

II. 양형기준 설정대상

1. 구성요건 및 법정형

가. 형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247	도박장소 등 개설	5년 ↓, 3000만 ↓
§ 248 ①	복표발매	5년 ↓, 3000만 ↓
§ 248 ②	복표발매 중개	3년 ↓, 2000만 ↓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30 ① 1호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	5년 ↓, 5000만 ↓
§ 30 ① 2호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	5년 ↓, 5000만 ↓
§ 30 ② 1호	무허가 사행행위영업	3년 ↓, 2000만 ↓
§ 30 ② 2호	사행행위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년 ↓, 2000만 ↓
§ 30 ② 3호	무허가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3년 ↓, 2000만 ↓
§ 30 ③ 1호 내지 14호	규제사항 등 위반	1년 ↓, 1000만 ↓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44 ① 1호	도박 또는 사행행위 주재, 방치	5년 ↓, 5000만 ↓
§ 44 ① 1의2호	경품 등 제공으로 사행성 조장	5년 ↓, 5000만 ↓
§ 44 ① 2호	미등급 게임물 유통·이용제공·진열보관/ 사행성 게임물 유통·이용제공·진열보관/ 환전업·환전알선업·재매입업	5년 ↓, 5000만 ↓
§ 44 ① 3호	폐쇄 등 조치 불응	5년 ↓, 5000만 ↓
§ 45 4호	변경 게임물 유통·이용제공·전시보관	2년 ↓, 2000만 ↓
§ 45 중 4호 제외 부분	규제사항 등 위반	2년 ↓, 2000만 ↓
§ 46	규제사항 등 위반	1년 ↓, 1000만 ↓

라. 관광진흥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81 1호	무허가 카지노업	5년 ↓, 5000만 ↓
§ 81 2호	카지노사업자 준수사항 등 위반	3년 ↓, 2000만 ↓
§ 83	상동	2년 ↓, 2000만 ↓

마. 한국마사회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50 1호/48 ①	경마 시행	5년 ↓, 5000만 ↓
§50 1호/48 ② 1호	유사행위를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지급	상동
§50 1호/48 ② 2호	경마 정보 등의 무단 복제 등	상동
§50 1호/48 ③ 1호	마권 구매 대행·알선 또는 마권 양도	상동
§50 1호/48 ③ 2호	외국 경주 이용 승마투표행위 등	상동
§50 2호	도박 또는 방조	상동
§50 3호, 51, 53 내지 55	경마 관련자 등 부정행위	생략

바. 경륜·경정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26	경주 방해 등	5년 ↓, 1500만 ↓
§ 27 ① 1호	승자투표권의 발매 등 영리행위	3년 ↓, 1000만 ↓
§ 27 ① 2호	도박 또는 방조	상동
§ 27 ① 3호, 29, 30, 31	경주 관련자 부정행위	생략
§ 34	투표권 구매제한 위반	1년 ↓, 300만 ↓

사.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24	경기 방해 등	5년 ↓, 3000만 ↓
§25, §26 ①3호, §27, §28	경기 관련자 부정행위	생략
§ 26 ① 1호	우권 등 발매 / 소싸움경기 시행	3년 ↓, 2000만 ↓
§ 26 ① 2호	도박 또는 방조	상동
§ 28	투표권 구매제한 등 위반	1년 ↓, 500만 ↓

아. 국민체육진흥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47 2호	유사행위를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지급	7년 ↓, 7000만 ↓
§ 48 1호	도박	5년 ↓, 5000만 ↓
§ 48 2호	유사시스템 설계·제작·유통 또는 이용 제공	상동
§ 48 6호	경기 방해	상동
§ 49 1호	유사행위를 위한 홍보 등 행위	3년 ↓, 3000만 ↓
§ 49 2호	투표권 판매제한 등 위반	상동
§47 2호, §48 3호, 4호, 5호	운동경기 관련자 부정행위	생략

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34 ① 1호	복권 발행 행위	3년 ↓, 2000만 ↓
§ 34 ① 2호	복권 정보 부당 제공 등	상동
§ 34 ① 3호	복권 관련자 부정 행위	상동
§ 34 ②	판매제한 등 위반	1년 ↓, 500만 ↓

차.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10 ②	풍속영업자가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하게 함	3년 ↓, 2000만 ↓

카. 식품위생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97 6호	식품접객업자의 도박 또는 사행행위 방지의무 위반	3년 ↓, 3000만 ↓

2. 양형기준 설정대상 검토

가. 형법

▣ 도박장소 등 개설 ⇒ 포함

- 사행행위를 주재하여 이득을 취하는 범죄의 기본 유형에 해당하며, 실무상 기소·처벌 사례도 빈번함

▣ 복표발매 및 복표발매 중개 ⇒ 포함

- 실무상 적용 사례는 적지만, 도박장소 등 개설과 보호법익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30조 1항 1호(투전기, 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 ⇒ 포함

- 불법 사행행위영업의 기본적인 유형이고 실무상 사례도 빈번함

▣ 30조 2항 1호, 30조 2항 3호(무허가 사행행위영업, 무허가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 포함

-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으나 30조 1항 1호와 보호법익이나 구성요건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음

▣ 30조 1항 2호(투전기, 사행성유기기구 유통) ⇒ 포함

- 30조 1항 1호 범행의 도구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보호법익에 특별한 차이가 없고 범정형도 동일함

▣ 30조 2항 2호, 30조 3항(규제·준수사항 위반) ⇒ 제외

- 구성요건이 다양하고 보호법익도 상이하어 동일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우며, 발생빈도가 낮아 사회적 관심도가 낮음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4조 1항 1호(도박,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 1의2호(경품제공 등 사행성 조장), 2호(미등급게임물·사행성게임물 이용제공 등,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포함

- 개별 구성요건은 다소 상이하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주재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실무상 기소·처벌사례가 빈번함

▣ 45조 2호(무허가·무등록 게임제공업 등) ⇒ 포함

-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다고 할 수 없으나, 무허가 사행행위영업, 무허가 사행기구 제조·판매업과 함께 포함시킴이 타당

▣ 45조 4호(등급분류된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등) ⇒ 포함

- 44조 1항 1호 등 범행에 수반하여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44조 1항 3호(폐쇄 등 조치 불응), 45조 2호, 4호를 제외한 나머지, 46조(규제사항 등 위반) ⇒ 제외

- 구성요건이 다양할 뿐 아니라 보호법익도 상이하어 동일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점, 사행성게임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점, 발생빈도가 낮아 사회적 관심도가 낮은 점 등을 감안

라. 관광진흥법

▣ 81조 1호(무허가 카지노업) ⇒ 포함

-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으나, 반사회성이 높고 다른 사행행위 주재 범행과 보호법익에서 차이점이 없는 점, 법정형이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함이 상당함

▣ 나머지 조항 ⇒ 제외

- 구성요건이 다양할 뿐 아니라 보호법익도 상이하야 동일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점, 발생빈도가 높지 않아 사회적 관심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제외함이 상당함

마. 한국마사회법

▣ 50조 1호 48조 1항(경마시행), 50조 1호 48조 2항 1호(유사행위), 50조 1호 48조 3항 2호(외국경주 이용 승마투표행위 등) ⇒ 포함

- 반사회성이 크고 보호법익에서 차이점이 없는 점, 법정형이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함이 상당함

▣ 나머지 조항 ⇒ 제외

- 보호법익이 상이하야, 실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제외함이 상당함
- 경마 관련자의 부정행위,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한 금품수수·공여 행위 등¹⁾에 관하여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사행행위·게임물 범죄군의 일반적인 범죄와 보호법익이 상이하고, 유사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외함이 상당함

바. 경륜·경정법

1) 경륜·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등도 유사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음

▣ 27조 1항 1호(승자투표권 발매 등) ⇒ 포함

- 사행행위 주재행위의 유형인 경륜·경정에 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거나 경주를 하는 행위에 관한 조항으로 보호법익에서 차이점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함이 상당함
- 다만 승자투표권의 발매,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이른바 ‘유사행위’)를 제외한 단순한 투표권 구매·주선·양도 등은 제외함이 타당함
- 미수죄(27조 2항) 포함 여부 : 살인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군에서 미수범의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제외

▣ 나머지 조항 ⇒ 제외

- 보호법익이 상이하며, 실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사. 전통 소싸움에 관한 법률

▣ 26조 1항 1호(우권 등 발매, 경기 시행) ⇒ 포함

- 실제 사례는 적지만 대상 경기만 다를 뿐 보호법익에서 차이점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함이 상당함
- 미수죄(26조 2항)의 포함 여부 ⇒ 제외

▣ 나머지 조항 ⇒ 제외

- 보호법익이 상이하며, 실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아. 국민체육진흥법

▣ 47조 2호(유사행위), 48조 2호(유사시스템 제작 등) ⇒ 포함

- 개별 구성요건은 다소 상이하나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발행행위 또는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반사회성이 높고 보호법익에 차이점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함이 상당함

▣ 나머지 조항 ⇒ 제외

- 구성요건이 다양하고, 보호법익도 상이하며, 발생빈도도 낮음

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 34조 1항 1호(복권발행) ⇒ 포함

- 사행행위 주재행위의 유형인 복권 발행행위에 관한 조항으로 보호법익에서 차이점이 없음

▣ 나머지 조항 ⇒ 제외

- 앞서 본 행위에 반드시 수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보호법익도 상이하어 제외함이 상당함

차.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 제외

- 관련 영업자의 영업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위반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 보호법익이 상이한 점, 발생빈도가 높지 않아 사회적 관심도가 낮은 점을 감안함

III. 범죄유형 분류

1. 유형분류의 기준

-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
-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이 공통되어야 함
- ▣ 게임물범죄의 경우 대상 범죄가 다수이고, 처벌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직관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유사 범죄군의 유형분류 사례

1)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9년	7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5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식품·보건범죄

- 허위표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8월	4월 - 1년	10월 - 1년6월
2	일반 유형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6월
3	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8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 유해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3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4년 - 7년
4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2년6월 - 4년	3년6월 - 6년	5년 - 8년
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0년

▣ 부정의료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3. 양형자료 조사결과²⁾

가. 선고내역

단위: 명, %

세부죄명			선고형		전체
			실형	집행유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제44조 1항 1호	수	19	62	81
		비율	23.5	76.5	100.0
	제44조 1항 1의2호	수	0	1	1
		비율	0.0	100.0	100.0
	제44조 1항 2호,	수	66	150	216

2) 2009. 1. 1. ~ 2013. 12. 31. 선고된 징역형 사건에 대한 분석임

단위: 명, %

세부죄명			선고형		전체
			실형	집행유예	
	제32조 1항 1, 4호	비율	30.6	69.4	100.0
		수	42	164	206
	제44조 1항 2호, 제32조 1항 7호	비율	20.4	79.6	100.0
		수	4	7	11
	제45조 2호	비율	36.4	63.6	100.0
		수	42	155	197
제45조 4호	비율	21.3	78.7	100.0	
	수	62	123	18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제30조 1항 1호	비율	33.5	66.5	100.0
		수	2	3	5
	제30조 1항 2호	비율	40.0	60.0	100.0
		수	0	7	7
	제30조 2항 1호	비율	0.0	100.0	100.0

나. 징역형의 형량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			24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제44조 1항 1호	수	0	0	4	0	25	0	24	13	14	0	0	0	1	0	81	8.35	
		비율	0.0	0.0	4.9	0.0	30.9	0.0	29.6	16.0	17.3	0.0	0.0	0.0	1.2	0.0	100.0		
	제44조 1항 1의2호	수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10.0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제44조 1항 2호, 제32조 1항 1, 4호	수	0	0	14	1	66	0	62	44	21	3	2	3	0	0	216	8.21	
		비율	0.0	0.0	6.5	0.5	30.6	0.0	28.7	20.4	9.7	1.4	0.9	1.4	0.0	0.0	100.0		
	제44조 1항 2호, 제32조 1항 7호	수	0	0	14	5	63	1	52	38	26	1	1	4	0	1	206	8.25	
		비율	0.0	0.0	6.8	2.4	30.6	0.5	25.2	18.4	12.6	0.5	0.5	1.9	0.0	0.5	100.0		
	제45조 2호	수	0	0	1	0	3	0	2	2	1	1	0	1	0	0	11	9.27	
		비율	0.0	0.0	9.1	0.0	27.3	0.0	18.2	18.2	9.1	9.1	0.0	9.1	0.0	0.0	100.0		
	제45조 4호	수	0	1	8	2	58	0	71	31	19	1	0	4	0	2	197	8.29	
		비율	0.0	0.5	4.1	1.0	29.4	0.0	36.0	15.7	9.6	0.5	0.0	2.0	0.0	1.0	100.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제30조 1항 1호	수	1	0	8	0	47	0	64	34	22	4	1	4	0	0	185	8.52
			비율	0.5	0.0	4.3	0.0	25.4	0.0	34.6	18.4	11.9	2.2	0.5	2.2	0.0	0.0	100.0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			24
특례법 위반	제30조 1항 2호	수	0	0	0	0	0	0	1	2	1	0	0	1	0	0	5	11.60
		비율	0.0	0.0	0.0	0.0	0.0	0.0	20.0	40.0	20.0	0.0	0.0	20.0	0.0	0.0	100.0	
	제30조 2항 1호	수	0	0	0	0	4	0	3	0	0	0	0	0	0	0	7	6.86
		비율	0.0	0.0	0.0	0.0	57.1	0.0	42.9	0.0	0.0	0.0	0.0	0.0	0.0	0.0	100.0	

4. 유형분류 방안

가. 대유형 분류

1) 1안 : 2개 유형 분류 ⇒ 불채택

▣ ‘사행행위의 주재’ 와 ‘사행행위 도구 등 제조·유통’ 으로 분류

▣ 분류방법의 장·단점

- 분류 유형이 간명하고, 공통의 양형인자를 추출하기 용이함
- 개개 구성요건의 차이보다는 영업의 본질적 내용을 중시하는 사행행위·게임물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의 특징에 부합
- 개별 범죄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기 어렵고, 이질적인 유형의 범행이 하나의 유형에 포함되어 양형인자 배치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 분류방법에 따른 해당 구성요건의 배치

- 사행행위의 주재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형법 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5년 ↓, 3000만 ↓
사행법 30조1항1호	투전기, 사행성유기기구 사행행위영업	5년 ↓, 5000만 ↓
게임법 44조1항1호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	5년 ↓, 5000만 ↓
게임법 44조1항1의2호	경품 제공 등 사행성 조장	5년 ↓, 5000만 ↓

게임법 44조1항2호, 32조1항1호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및 진열보관 ³⁾	5년 ↓, 5000만 ↓
게임법 44조1항2호, 32조1항4호	사행성 게임물 이용제공 및 진열보관 ⁴⁾	5년 ↓, 5000만 ↓
게임법 44조1항2호, 32조1항7호	환전업, 환전알선업, 재매입업	5년 ↓, 5000만 ↓
게임법 45조4호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및 진열보관 ⁵⁾	2년 ↓, 2000만 ↓
관광진흥법 81조1호	무허가 카지노업	5년 ↓, 5000만 ↓
마사회법 50조1호, 48조1항	경마 시행	5년 ↓, 5000만 ↓
마사회법 50조1호, 48조2항1호	승마투표 유사행위	5년 ↓, 5000만 ↓
마사회법 50조1호, 48조3항2호	외국 경주 이용 승마투표행위 등	5년 ↓, 5000만 ↓
경륜경정법 27조1항1호	경륜경정 승마투표권의 발매 등 영리행위	3년 ↓, 1000만 ↓
전통소싸움법 26조1항1호	우권 등 발매 / 소싸움경기 시행	3년 ↓, 2000만 ↓
국민체육진흥법 47조1호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7년 ↓, 7000만 ↓
국민체육진흥법 48조2호	정보통신망 이용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시스템의 이용 제공 ⁶⁾	5년 ↓, 5000만 ↓
복권법 34조1항1호	복권 발행	3년 ↓, 2000만 ↓

● 사행행위 도구 등 제조·유통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사행법 30조1항2호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 판매, 판매 목적 제조·수입	5년 ↓, 5000만 ↓
게임법 44조1항2호, 32조1항1호	미등급 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진열·보관	5년 ↓, 5000만 ↓
게임법 44조1항2호, 32조1항4호	사행성 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진열·보관	5년 ↓, 5000만 ↓
게임법 45조4호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유통 및 전시·보관	2년 ↓, 2000만 ↓
국민체육진흥법 48조2호	정보통신망 이용 투표권발행시스템 설계·제작·유통	5년 ↓, 5000만 ↓

2) 2안 : 5개 유형 분류 ⇒ 채택

▣ 도박장소개설 등, 불법 스포츠도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불법

3) 해당 적용법조는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바, 그 중에서 사행행위를 주재하는 행위(개설 등) 유형에 포섭되는 부분은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에 한하고, 유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는 아래 사행행위에 수반되는 도구 등을 제조·유통하는 행위(제조·유통 등) 유형에 포섭됨

4) 각주 3)과 같음

5) 각주 3)과 같음

6) 해당 적용법조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바, 그 중에서 사행행위를 주재하는 행위(개설 등) 유형에 포섭되는 부분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한하고, 설계·제작·유통하는 행위는 아래 사행행위에 수반되는 도구 등을 제조·유통하는 행위(제조·유통 등) 유형에 포섭됨

게임물 등 유통, 무허가·무등록 영업 등으로 세분

▣ 분류방법의 장단점

- 구성요건의 내용 및 보호법익, 규율하는 법률,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세분함으로써 개별 범죄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
- 범죄유형을 적절히 세분함으로써 양형기준 적용상의 사용자 편의성이 높고 양형인자 배치에도 유리함
- 대상 구성요건이 매우 많아 이를 충실히 반영한 유형분류는 사실상 어렵고,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 분류방법에 따른 해당법조의 배치

- 도박장소 개설 등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형법 247조	영리 목적 도박장소 등 개설	5년 ↓, 3000만 ↓
형법 248조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 발매·중개	5년 ↓, 3000만 ↓
사행행위규제법 30조1항1호	투전기, 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5년 ↓, 5000만 ↓
관광진흥법 81조1호	무허가 카지노업	5년 ↓, 5000만 ↓
복권법 34조1항1호	복권 발행	3년 ↓, 2000만 ↓

- 무허가 카지노업은 무허가·무등록 영업 유형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실제 허가를 받는 경우가 드문 점,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도박장소·공간 개설과 같은 유형에 배치

-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마사회법 50조1호, 48조1항	경마시행	5년 ↓, 5000만 ↓
마사회법 50조1호, 48조2항1호	승마투표 유사행위로 적중자에게 재물 등 지급	5년 ↓, 5000만 ↓
마사회법 50조1호, 48조3항2호	외국 경주 관련 전자적 방법 승마투표행위 등	5년 ↓, 5000만 ↓
경륜·경정법 27조1항1호	승자투표권 발매, 적중자에게 금전 지급 등 영리행위	3년 ↓, 1000만 ↓

전통소싸움법 26조1항1호	우권 등 발매, 적중자에게 금전 지급하는 소싸움 경기 시행	3년 ↓, 2000만 ↓
국민체육진흥법 47조1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등 제공	7년 ↓, 7000만 ↓
국민체육진흥법 48조2호	정보통신망 이용 투표권발행시스템 공중 이용제공	5년 ↓, 5000만 ↓

- 구성요건이 유사한 유사경마, 유사경륜·경정 유사스포츠토토 등(이른바 ‘유사행위’)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함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게임법 44조1항2호, 32조1항1호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진열·보관	5년 ↓, 5000만 ↓
게임법 44조1항1호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도박·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	5년 ↓, 5000만 ↓
게임법 44조1항1의2호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품제공 등 사행성 조장	5년 ↓, 5000만 ↓
게임법 44조1항2호, 32조1항4호	사행성 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진열·보관	5년 ↓, 5000만 ↓
게임법 44조1항2호, 32조1항7호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5년 ↓, 5000만 ↓
게임법 45조4호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전시·보관	2년 ↓, 2000만 ↓

- 일부 구성요건은 도박장소 등 개설과 보호법익이 유사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경우도 많지만, 일부 구성요건은 사행성과 무관하여 보호법익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
- ‘유통’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게임법위반 범죄를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양형기준 적용상의 편의성을 높임

● 불법게임물 등 유통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사행법 30조1항2호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 판매, 판매 목적 제조·수입	5년 ↓, 5000만 ↓
게임법 44조1항2호, 32조1항1호	미등급 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진열·보관	5년 ↓, 5000만 ↓
게임법 44조1항2호, 32조1항4호	사행성 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진열·보관	5년 ↓, 5000만 ↓
게임법 45조4호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유통 및 전시·보관	2년 ↓, 2000만 ↓
국민체육진흥법 48조2호	정보통신망 이용 투표권발행시스템 설계·제작·유통	5년 ↓, 5000만 ↓

- 2개 유형 분류 중 사행행위의 도구 등 제조·유통 유형과 같음

● 무허가·무등록 영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사행법 30조2항1호	무허가 사행행위영업	3년 ↓, 2000만 ↓
사행법 30조2항3호	무허가 사행기구제조·판매업	3년 ↓, 2000만 ↓
게임법 45조2호	무허가·무등록 게임제작·배급·제공업	2년 ↓, 2000만 ↓

나. 중·소유형 분류

1) 1안 : 일반규모 / 대규모 분류 ⇒ 불채택

- 해당 범죄군의 범죄 대부분이 영업성을 띠므로 이를 나타내는 지표, 즉 영업기간, 매출액(또는 이득액), 게임기 대수(또는 영업장 면적 등), 상시 사용자 수(또는 관여한 공범 수) 등을 종합한 영업 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양형 실무도 위와 같은 요소를 중요한 양형인자로 반영하고 있었으므로, 기존 양형실무에도 부합함
- 다만, 영업 규모를 나누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구성요건에 따라 영업 및 수익 구조가 다르거나 매출액 등에 관한 수사가 미진하여 영업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2) 2안 : 단순 / 영업적·조직적 분류 ⇒ 불채택

- 당구장, 다방 등지에서 소량의 게임기를 구비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오로지 사행행위만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개설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비난 가능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
- 다만, 영업적·조직적 유형이 아닌 범행은 예외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미 영업범의 형태로 구성요건이 설정된 범죄의 경우 이

분류기준에 포섭되기 어려움

3) 3안 : 구성요건 유형 또는 법정형에 따른 분류 ⇒ 채택

- 법정형이 다른 경우 그 비난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는 범죄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간명한 방법임
- 다만, 구성요건이 달라도 실질적인 비난가능성 및 실무상 형량 분포가 유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5. 검토의견에 의한 유형분류

▣ 도박장소 개설 등

유형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복권발행, 복표발매·중개	복권 발행	복권법 34조1항1호	3년 ↓, 2000만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 발매	형법 248조 1항	5년 ↓, 3000만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 발매를 중개	형법 248조 2항	3년 ↓, 2000만 ↓
2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투전기, 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	사행법 30조1항1호	5년 ↓, 5000만 ↓
		무허가 카지노업	관광진흥법 81조1호	5년 ↓, 5000만 ↓
3	도박장소·공간 개설	영리 목적 도박장소나 공간 개설	형법 247조	5년 ↓, 3000만 ↓

▣ 불법 스포츠도박 등

유형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유사경륜·경정 등	승자투표권 등 발매, 적중자에게 금전 지급하는 경주 시행 등	경륜·경정법 27조1항1호, 24조	3년 ↓, 1000만 ↓
		우권 등 발매, 적중자에게 금전 지급하는 소싸움 시행	전통소싸움법 26조1항1호	3년 ↓, 2000만 ↓

유형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2	유사경마	경마 시행	한국마사회법 50조1호, 48조1항	5년 ↓, 5000만 ↓
		승마투표 유사행위로 재물 등 지급	한국마사회법 50조1호, 48조2항1호	5년 ↓, 5000만 ↓
		외국 경주에 전자적 방법 이용 승마투표행위 등	한국마사회법 50조1호, 48조3항2호	5년 ↓, 5000만 ↓
2	유사스포츠토토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국민체육진흥법 47조2호, 26조1항	7년 ↓, 7000만 ↓
		정보통신망 이용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시스템 이용제공	국민체육진흥법 48조4호, 26조2항1호	5년 ↓, 5000만 ↓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유형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등	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진열·보관	게임법 45조4호, 32조1항2호	2년 ↓, 2000만 ↓
2	환전·환전알선· 재매입 영업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게임법 44조1항2호, 32조1항7호	5년 ↓, 5000만 ↓
3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게임물관련사업자가 도박·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	게임법 44조1항1호, 28조2호	5년 ↓, 5000만 ↓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진열·보관	게임법 44조1항2호, 32조1항1호	5년 ↓, 5000만 ↓
		사행성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진열·보관	게임법 44조1항2호, 32조1항4호	5년 ↓, 5000만 ↓
		게임물관련사업자가 경품제공 등 사행성 조장	게임법 44조1항1의2호, 28조3호	5년 ↓, 5000만 ↓

■ 불법게임물 등 유통

유형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진열·보관	게임법 45조4호, 32조1항2호	2년 ↓, 2000만 ↓
2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유기기구, 온라인스포츠토토발행시스템	미등급 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진열·보관	게임법 44조1항2호, 32조1항1호	5년 ↓, 5000만 ↓
		사행성 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진열·보관	게임법 44조1항2호, 32조1항4호	5년 ↓, 5000만 ↓
		투전기, 사행성유기기구 판매, 판매 목적 제조·수입	사행법 30조1항2호	5년 ↓, 5000만 ↓
		정보통신망 이용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시스템 설계·제작·유통	국민체육진흥법 48조4호, 26조2항1호	5년 ↓, 5000만 ↓

■ 무허가·무등록 영업

유형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무등록 게임제작·배급업	게임법 45조2호, 25조	2년 ↓, 2000만 ↓
		무허가·무등록 게임제공업	게임법 45조2호, 26조1항, 2항, 3항	2년 ↓, 2000만 ↓
2	사행행위 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무허가 사행행위영업	사행법 30조2항1호	3년 ↓, 2000만 ↓
		무허가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사행법 30조2항3호	3년 ↓, 2000만 ↓

IV. 형량범위 검토

1. 양형자료 조사결과 중 선고내역⁷⁾

단위: 명, %

세부죄명	선고형		전체
	실형	집행유예	

단위: 명, %

세부죄명			선고형		전체
			실형	집행유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제44조 1항 1호	수	19	62	81
		비율	23.5	76.5	100.0
	제44조 1항 1의2호	수	0	1	1
		비율	0.0	100.0	100.0
	제44조 1항 2호, 제32조 1항 1, 4호	수	66	150	216
		비율	30.6	69.4	100.0
	제44조 1항 2호, 제32조 1항 7호	수	42	164	206
		비율	20.4	79.6	100.0
	제45조 2호	수	4	7	11
		비율	36.4	63.6	100.0
	제45조 4호	수	42	155	197
		비율	21.3	78.7	100.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제30조 1항 1호	수	62	123	185
		비율	33.5	66.5	100.0
	제30조 1항 2호	수	2	3	5
		비율	40.0	60.0	100.0
	제30조 2항 1호	수	0	7	7
		비율	0.0	100.0	10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제48조, 제26조	수	7	30	37
		비율	18.9	81.1	100.0
도박개장 등	도박개장	수	258	862	1120
		비율	23.0	77.0	100.0
	도박장소개설	수	6	6	12
		비율	50.0	50.0	100.0
한국마사회법위반	제50조, 제48조	수	264	868	1132
		비율	23.3	76.7	100.0

2. 각 유형별 형량범위 검토

가. 도박장소 개설 등

7) 2009. 1. 1. ~ 2013. 12. 31. 선고된 징역형 사건(다만 도박개장은 2012. 1. 1.~ 2013. 12. 31. 선고된 징역형 사건)에 대한 분석이며, 이하 형량분포 또한 같음

1) 복권발행, 복표발매·중개(1유형)

■ 실제 기소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양형통계를 기초로 한 형량 범위 설정은 불가능함

■ 2013. 4. 5. 형법 개정으로 징역형의 상한이 복표발매죄는 3년에서 5년으로, 복표발매중개죄는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됨

● 개정이유

- 최근 도박장소 등 개설이나 복표발매로 인한 수입이 범죄단체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등 도박장소 등 개설이나 복표발매로 인하여 각종 사회문제 발생
- 도박장소 등 개설과 복표발매죄가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대상범죄가 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

■ 형량 범위 검토

- 제1안 : 2유형(사행성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과 동일하게 설정 ⇒ 불채택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복권발행, 복표발매·중개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 2유형과 범죄의 본질이 동일하고, 형법 개정으로 복표발매죄에 대한 법정형이 같아진 점 고려

- 제2안 : 2유형을 기준으로 하되, 기본영역의 하한과 가중영역의 상한을 다소 하향 조정 ⇒ 채택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복권발행, 복표발매·중개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 복권법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인 점 등 고려

2) 사행성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2유형)

▣ 형량 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	24		
사행성유기 기구영업	제30조 1항 1호	수	1	0	8	0	47	0	64	34	22	4	1	4	0	0	185	8.52
		비율	0.5	0.0	4.3	0.0	25.4	0.0	34.6	18.4	11.9	2.2	0.5	2.2	0.0	0.0	100.0	

- 선고형량은 6월, 8월, 10월이 78%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사행성유기기구 영업장은 범죄수익 등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아 중소 규모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임
- 무허가 카지노업(관광진흥법위반)에 대한 선고 형량은 법원 판결문 검색시스템으로 확인한 결과 대부분 6월 ~ 1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년6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음

▣ 형량 범위 검토

- 제1안 ⇒ 채택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	사행성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 기본영역의 형량범위를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 같은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2유형(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마약 투약·단순소지 2유형(대마 등 투약·소지)>과 동일하게 8월 - 1년6월로 설정하고, 감경영역의 상한은 10월로, 가중영역의 상한은 3년6월로 설정

- 영업규모를 양형인자로 반영하고, 영업규모 또는 범죄수익규모가 큰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 대하여 엄정한 형을 선고하도록 가중영역의 상한을 다소 높게 설정
- 선고사례의 69.8%가 기본영역에 포섭

● 제2안 ⇒ 불채택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사행성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 기본 영역의 하한을 6월로, 가중 영역의 상한을 3년으로 각 설정
- 실제 사례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징역 6월의 선고형을 기본영역으로 포섭함
- 선고사례의 95.2%가 기본영역에 포섭

● 검토의견 ⇒ 제1안

-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인 범죄 중 사회적·국가적 법익과 관련된 범죄의 기본영역은 하한을 8월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징역 8월 미만이 선고된 실제 사례들은 양형인자의 적절한 배치를 통하여 상당 부분 감경영역에 포섭할 수 있음

3) 도박장소·공간 개설(3유형)

■ 형량 분포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4	36			
도박	도박개장	수	6	68	5	378	1	298	1	197	130	11	2	0	16	1	5	1	1120	8.17
		비율	0.5	6.1	0.4	33.8	0.1	26.6	0.1	17.6	11.6	1.0	0.2	0.0	1.4	0.1	0.4	0.1	100	
	도박장 소개설	수	0	2	0	0	0	3	0	2	3	1	0	0	1	0	0	0	12	10
		비율	0.0	16.7	0.0	0.0	0.0	25.0	0.0	16.7	25.0	8.3	0.0	0.0	8.3	0.0	0.0	0.0	100	
	전체	수	6	70	5	378	1	301	1	199	133	12	2	0	17	1	5	1	1132	8.19

	비율	0.5	6.2	0.4	33.4	0.1	26.6	0.1	17.6	11.7	1.1	0.2	0.0	1.5	0.1	0.4	0.1	100
--	----	-----	-----	-----	------	-----	------	-----	------	------	-----	-----	-----	-----	-----	-----	-----	-----

- 2013. 4. 5. 형법 개정으로 징역형의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조정됨

- 선고형량은 6월, 8월, 10월이 77.6%의 비중을 점하고 있음

- 2유형과 평균 선고형량은 비슷하지만,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있음

- 해외에 서버를 두는 등 지능적·조직적인 범행으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경우임

▣ 형량 범위 검토

- 제1안 : 2유형을 기준으로 하되, 가중 영역의 상한을 상향 ⇒ 채택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2	도박장소 등 개설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4년 ⁸⁾

- 2유형과 비교할 때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있는 점, 구성요건의 특성상 다양한 범죄 유형이 포섭될 수 있고 특히 지능적·조직적 범행,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 운영 사건에서 다수의 도박 참여자, 고액의 범죄수익 등으로 엄벌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고려

- 형량 분포 상 선고사례의 58.8%가 기본영역에 포섭됨

- 제2안 : 2유형과 동일하게 설정 ⇒ 불채택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2	도박장소 등 개설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 2유형과 법정형이 같고, 실제 평균 선고형량도 비슷한 점 고려

8) 1년 - 4년의 가중 영역 형량범위는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가중 영역 형량범위와 동일함

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

1) 유사경륜·경정 등(1유형)

▣ 형량 분포

- 경륜·경정법위반 사건은 법원 판결문검색시스템으로 확인한 결과 선고형은 6월 ~ 1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1년6월 이상의 실형(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도 수건 발견됨
- 한국마사회법위반죄(2유형)와의 법정형 차이에도 불구하고 선고형의 유의미한 편차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전통소싸움법위반죄는 실제 선고 사례가 발견되지 않음

▣ 형량 범위 검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유사경륜·경정 등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 도박장소 개설 등 범죄 중 2유형(사행성유기기구 영업 등)과 기본·감경영역을 동일하게 설정하되, 가중영역 상한을 법정형 상한과 동일하게 설정
- 법정형이 같거나 오히려 가볍고, 범죄의 본질이 유사한 점 고려
- 가중영역의 상한은 법정형의 상한과 동일하게 설정함

2) 유사경마(2유형)

▣ 형량분포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4			36
한국마사회법 위반	수	0	10	1	60	0	74	2	66	38	2	0	1	15	0	6	0	275	9.41
	비율	0.0	3.6	0.4	21.8	0.0	26.9	0.7	24.0	13.8	0.7	0.0	0.4	5.5	0.0	2.2	0.0	100	

- 선고형량은 6월, 8월, 10월이 72.7%의 비중을 점함 ⇒ 한국마사회 법위반죄 중 유사행위(48조 2항 1호)에 대한 것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실제 선고된 사례가 매우 적음

▣ 형량 범위 검토

- 제1안 : 도박장소 개설 등 범죄 중 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과 동일하게 설정 ⇒ 불채택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	유사경마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4년

- 평균 선고형량이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는 점 고려

- 제2안 : 도박장소 개설 등 범죄 중 2유형(사행성유기기구 영업 등)과 동일하게 설정 ⇒ 채택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	유사경마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 범죄구성요건의 유사성과 법정형, 중형 선고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 도박장소 등 개설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중영역의 상한을 높일 필요성은 적음

3) 유사스포츠투토토(3유형)

▣ 형량 분포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4	36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수	0	1	0	11	0	17	0	6	1	1	0	0	0	0	0	0	37	7.89
	비율	0.0	2.7	0.0	29.7	0.0	45.9	0.0	16.2	2.7	2.7	0.0	0.0	0.0	0.0	0.0	0.0	100	

- 선고형량은 6월, 8월, 10월이 91.8%의 비중을 점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중 ‘유사시스템 이용제공’ 으로 인한 부분은 실제 신고 사례를 발견할 수 없음

▣ 형량 범위 검토

- 제1안 : 도박장소 개설 등 범죄 중 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을 기준으로 하되, 형량범위를 다소 상향 ⇒ 채택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3	유사스포츠토토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 주된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인 점 반영
- 유사스포츠토토는 사행성 게임장, 유사경마 등에 비해 일반인·청소년 등의 접근이 쉬워 폐해가 크고, 조직적인 승부조작 범행 등과 연계하는 경우 등 엄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 참작
- 형량 분포 상 신고사례의 67.6%가 기본영역에 포섭됨

- 제2안 : 도박장소 개설 등 범죄 중 3유형과 동일하게 설정 ⇒ 불 채택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3	사설스포츠토토 등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4년

- 실제 신고형이 도박장소 등 개설 중 3유형보다 무겁지 않고, 위 유형의 형량범위가 규범적으로 다소 높게 설정된 점 참작
- 형량 분포 상 신고사례의 67.6%가 기본영역에 포섭됨

다.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등(1유형)

▣ 형량 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	24		
게임산업 법	제45조 4호	수	0	1	8	2	58	0	71	31	19	1	0	4	0	2	197	8.29
		비율	0.0	0.5	4.1	1.0	29.4	0.0	36.0	15.7	9.6	0.5	0.0	2.0	0.0	1.0	100.0	

- 선고형량은 6월, 8월, 10월이 81.1%의 비중을 점하고 있음
- 법정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 3유형과 사이에 선고형의 유의미한 편차를 확인하기 어려움
- 구성요건상 사행성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 실제 사건은 대부분 사행성을 수반하는 사례들임

▣ 형량 범위 검토

- 제1안 ⇒ 채택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8월	6월 - 1년2월	10월 - 2년

- 도박장소 개설 등 범죄 중 2유형(사행성유기기구 영업 등)을 기준으로 법정형의 차이를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하향 조정하되, 법정형이 같은 <배임증재죄 중 1억 원 이상 유형> 등의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설정
- 실무상 사행성 게임장영업의 상당수가 위 조항으로 처벌되고 있고, 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과 형량분포에도 차이가 없는 점 참작
- 사행성과 무관한 범행의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적정한 양형 구간을 확보할 수 있음

- 제2안 ⇒ 불채택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5-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등	- 8월	4월 - 1년	8월 - 2년

- 법정형이 같은 무허가·무등록 영업 중 1유형(게임제작·배급업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감경영역과 기본영역의 상한을 각 상향 조정

2)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2유형)

▣ 형량 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	24		
게임산업 법	제44조 1항 2호	수	0	0	14	5	63	1	52	38	26	1	1	4	0	1	206	8.25
	제32조 1항 7호	비율	0.0	0.0	6.8	2.4	30.6	0.5	25.2	18.4	12.6	0.5	0.5	1.9	0.0	0.5	100.0	

- 사행행위에 수반되는 환전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생산된 게임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이 있고, 이러한 유형은 게임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되기도 함

▣ 형량 범위 검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환전·환전알선· 재매입 영업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 도박장소 개설 등 범죄의 2유형(사행성유기기구 영업 등)을 기준으로 하되, 기본영역의 하한과 감경영역을 각 하향 조정
- 사행성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 않고, 사행성과 무관한 경우 위 유형에 비하여 불법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고려

3) 게임물 이용 사행성영업 등(3유형)

▣ 형량 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	24		
게임산업 범위반	제44조 1항 1호, 28조 2호	수	0	0	4	0	25	0	24	13	14	0	0	0	1	0	81	8.35
		비율	0.0	0.0	4.9	0.0	30.9	0.0	29.6	16.0	17.3	0.0	0.0	0.0	1.2	0.0	100.0	
	제44조 1항 1의2호, 28조3호	수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10.0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제44조 1항 2호, 제32조 1항 1, 4호	수	0	0	14	1	66	0	62	44	21	3	2	3	0	0	216	8.21
		비율	0.0	0.0	6.5	0.5	30.6	0.0	28.7	20.4	9.7	1.4	0.9	1.4	0.0	0.0	100.0	

- 사행성 게임장은 영업규모와 범죄수익 등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아 중소규모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임
-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은 구성요건상 사행성을 요구하지 않으나, 실무상 대부분의 범행이 사행성을 수반하고 있음

▣ 형량 범위 검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3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등 범죄는 도박장소 개설 등 범죄 중 2유형(사행성유기기구 영업 등)과 법정형의 차이가 없고, 실무상 사행성이 수반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므로 이와 동일하게 설정
- 사행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특별감경인자를 통하여 형량구간 조정

라. 불법게임물 등 유통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1유형)

▣ 형량 분포

- 양형기준 대상범죄 분석 자료 중 8월/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으며,

법원 판결문검색시스템으로 확인한 결과 6월 ~ 1년6월 사이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보임

- 법정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유형과 유의미한 형량의 편차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구성요건으로는 사행성이 반드시 수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 실제 사건은 대부분 사행성을 수반하는 사례들임

▣ **형량 범위 검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 8월	6월 - 1년2월	10월 - 2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등)과 동일하게 설정
- 위 유형 범죄의 물적인 도구를 제공하는 범죄로서, 불법게임장영업의 억제라는 측면과 실제 법정형에 비추어 높은 형이 선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 사행성과 무관한 범죄는 특별감경인자를 통하여 조정

2)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투토 발행시스템(2유형)**

▣ **형량 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	24			
사행행위 법위반	제30조 1항 2호	수	0	0	0	0	0	0	1	2	1	0	0	1	0	0	5	11.6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20.0	40.0	20.0	0.0	0.0	20.0	0.0	0.0	

- 게임산업진흥법위반죄를 법원 판결문검색시스템으로 확인한 결과

선고형은 대부분 6월 ~ 1년6월 사이에 분포하고 있음

- 온라인 스포츠포탈 발생시스템 유통은 실제 선고사례가 매우 적음
- 구성요건상 사행성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 실제 사건은 대부분 사행성을 수반하는 사례들임

▣ 형량 범위 검토

- 제1안 : 도박장소 개설 등 범죄 중 2유형(사행성유기기구 영업 등) 보다 기본·감경영역을 상향 조정 ⇒ 불채택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유기기구, 온라인스포츠포탈 발생시스템	4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6월

-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도박장소 개설 등 유형 중 2유형보다 다소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감안

- 제2안 : 도박장소 개설 등 유형 중 2유형과 동일하게 설정 ⇒ 채택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유기기구, 온라인스포츠포탈 발생시스템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 법정형이 같고, 사례가 많지 않아 규범적으로 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고려

마. 무허가·무등록 영업

1)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1유형)

▣ 형량 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			24
게임산업 법위반	제45조 2호	수	0	0	1	0	3	0	2	2	1	1	0	1	0	0	11	9.27
		비율	0.0	0.0	9.1	0.0	27.3	0.0	18.2	18.2	9.1	9.1	0.0	9.1	0.0	0.0	100.0	

- 허가나 등록 없이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행성게임물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됨
- 일부 구성요건에는 미등급 게임물의 제작 또는 공급도 그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음

▣ 형량 범위 검토

- 제1안 : 불법게임물 등 유통 중 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과 동일하게 설정 ⇒ 불채택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8월	6월 - 1년2월	10월 - 2년

- 법정형이 같고, 실제 사안에서 사행성 등 불법성을 수반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점 고려

- 제2안 : 법정형이 같은 공문서 등 부정행사죄를 참고하되, 가중영역의 하한을 8월로, 가중영역의 상한을 법정형 상한인 2년으로 설정 ⇒ 채택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 단순 무허가·무등록 영업은 그 불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사행성 등 게임 내용의 불법성이 수반되는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

여 가중영역에 포섭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

2)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2유형)

▣ 형량 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			24	
사행행위 법	제30조 2항 1호	수	0	0	0	0	4	0	3	0	0	0	0	0	0	0	0	7	6.86
		비율	0.0	0.0	0.0	0.0	57.1	0.0	42.9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 실제 사례들은 낚시터 등에서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한 경우 등이 대부분으로 범행 유형이 한정되어 있고 불법성도 비교적 약한 사안들임

▣ 형량 범위 검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 도박장소 개설 등 범죄 중 1유형(복표발매 등)보다 형량범위를 하향 조정
 - 위 유형보다 법정형이 낮고,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법정형이 3년 이하인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작

3. 검토의견에 따른 형량범위

가. 도박장소 개설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2	사행성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3	도박장소·공간 개설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4년

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유사 경륜·경정 등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유사 경마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3	유사 스포츠폠토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다.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8월	6월 - 1년2월	10월 - 2년
2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3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라. 불법게임물 등 유통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 8월	6월 - 1년2월	10월 - 2년
2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폠토 발행시스템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마. 무허가·무등록 영업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2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V. 양형인자 검토

1. 양형인자표

1) 도박장소 개설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복표 발매를 중개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단속대비 시설의 설치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불법스포츠도박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단속대비 시설의 설치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행위자 /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단속대비 시설의 설치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행위자 /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4) 불법게임물 유통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유통한 게임물, 사행성유기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단속대비 시설의 설치
	행위자 /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5) 무허가·무등록 영업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

양형 인자		는 경우 ○단순 가담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사행성 영업 또는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배급(1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단속대비 시설의 설치
	행위자 /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구체적 검토

가. 특별양형인자

1)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특별가중인자

- ▣ 게임물범죄에 있어서는 범죄수익 또는 영업규모가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이고, 실무에서도 주요한 양형인자로 고려되고 있음
- ▣ 게임물범죄는 범죄수익 또는 영업규모에 따라 따로 소유형 분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양형인자로 반영하되, 그 규모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큰 경우 가중영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 모든 유형에 대하여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라는 양형인자를 설정하되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 정의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함

- 특별가중인자를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론이 있을 수 있으나,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에서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를 별도의 정의규정 없이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한 예가 있음

▣ 범죄수익 또는 영업규모에 관한 양형인자의 정의 방법

- 게임관련범위반범죄 중에서 도박장소 개설 등 유형의 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중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도박장(도박공간 개설), 그리고 불법스포츠도박 등 유형은 범죄수익 규모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범죄수익의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양형인자 설정이 가능함
- 그러나 다른 유형의 범죄는 범죄수익 등의 규모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범죄의 태양 또는 영업방식이 다양하여 범죄수익, 영업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양형인자 설정이 곤란함⁹⁾
- 제1안 : 도박공간개설, 불법스포츠도박 등 유형에 한하여 금액기준을 명시
 - 대부분 도박 등 참가자들로부터 모은 금품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드러나 있고, 범죄사실의 하나로 공소장 및 판결문에도 적시되며, 주요 양형사유로 고려되고 있음
 - 오프라인 게임장, 도박장은 위 유형과는 범행의 양상이 다르고, 일부 도금 등이 압수되더라도 이를 모은 금품 또는 범죄수익 등으로 공소장 및 판결문에 적시하지도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도박, 스포츠평타, 유사경마 등이 장차 불법 사행성 영업의

9) 게임장 영업 등의 경우 지역 등에 따라 영업규모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음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이므로, 엄정하고 공정한 양형실무의 정착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양형기준의 제시가 필요함

- 오프라인 게임장, 도박장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금액 기준 제시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범죄에 대한 금액 기준 제시까지 포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아래 [모은 금품, 범죄수익액과 영업규모]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명시할 경우 도박 등 참가자들로부터 모은 금품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수익금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범죄수익 또는 영업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제2안 : 모든 유형에 관하여 구체적 금액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 도박, 사행성 영업은 모두 그 본질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의 현실적 한계로 범죄수익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금액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 더 손쉽게 참가자를 모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유형을 우대하는 것이거나, 수사·재판상의 한계로 인한 밝혀지지 않은 범죄수익의 존재 가능성을 이유로 오프라인 유형을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함
- 양형분석 사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모은 금품 10억 원, 범죄수익 5천만 원이 적절한 기준인지에 대하여도 반론이 있을 수 있음
- 모은 금품, 범죄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규모 등에 관하여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범죄수익 등에 관해서도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음

● 검토의견 ⇒ 제2안

- 제1안의 장점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제시하기

에는 분석대상 사례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다른 유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제1안은 채택하기 어려움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금, 배팅금 등 명목으로 참가자들로부터 모은 금품 또는 환전 금액이 매우 크거나, 모은 금품에서 배당금, 당첨금 등으로 참가자들에게 반환한 금품을 제외한 수익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매우 큰 경우
 - 게임물 이용자, 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 도박 등 참가자의 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 영업을 계속한 경우
 - 사행성유기기구, 게임기, PC 등의 설치 또는 제조·판매 대수가 매우 많은 경우, 또는 영업장의 시설규모가 매우 크거나 관여한 공범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참고 [모은 금품, 범죄수익액과 영업규모]

- 1심 판결 중 징역 1년(가중영역 하한) 이상이 선고된 한국마사회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49건, 도박공간개설 사건 22건을 대상(각 단일범)으로 도박 등 참가자들로부터 모은 금품 및 범죄로 인한 수익액을 분석함
- 모은 금품
 - 한국마사회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44건)

모은 금품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500억 원미만	500억 원 이상
판결건수	15건	15건	9건	4건	1건
주형별	1년 : 13건	1년 : 9건	1년 : 6건	1년 : 1건	1년6월 : 1건

건수	1년6월 : 2건	1년2월 : 1건 1년6월 : 2건 2년 : 3건	1년2월 : 1건 1년6월 : 2건	1년6월 : 2건 2년 : 1건	
실형/집유 건수	실형 : 4건 집유 : 11건	실형 : 4건 집유 : 11건	실형 : 6건 집유 : 3건	실형 : 2건 집유 : 2건	실형 : 1건 집유 : 0건

- 도박공간개설(18건)

모은 금품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500억 원 이상
판결건수	4건	7건	2건	3건	2건
주형별 건수	1년 : 4건	1년 : 5건 1년2월 : 2건	1년 : 2건	1년 : 3건	1년 : 2건
실형/집유 건수	실형 : 1건 집유 : 3건	실형 : 7건 집유 : 0건	실형 : 2건 집유 : 0건	실형 : 0건 집유 : 3건	실형 : 1건 집유 : 1건

● 범죄수익

- 한국마사회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16건)

범죄수익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판결건수	2건	4건	2건	6건	2건
주형별 건수	1년 : 1건 1년6월 : 1건	1년 : 3건 2년 : 1건	1년 : 1건 1년6월 : 1건	1년 : 3건 1년2월 : 1건 1년6월 : 2건	1년2월 : 1건 2년 : 1건
실형/집유 건수	실형 : 0건 집유 : 2건	실형 : 1건 집유 : 3건	실형 : 1건 집유 : 1건	실형 : 4건 집유 : 2건	실형 : 0건 집유 : 1건

- 도박공간개설(17건)

범죄수익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판결건수	4건	6건	2건	1건	4건

주형별 건수	1년 : 3건 1년2월 : 1건	1년 : 5건 1년2월 : 1건	1년 : 2건	1년 : 1건	1년 : 4건
실형/집유 건수	실형 : 3건 집유 : 1건	실형 : 5건 집유 : 1건	실형 : 1건 집유 : 1건	실형 : 1건 집유 : 0건	실형 : 2건 집유 : 2건

2) 조직적·전문적 범행 ⇒ 별도 양형인자 규정 ×

- ▣ 게임물범죄는 대부분 영업범으로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고, 범행방법이 전문적인 경우 또한 많음
- ▣ 검토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을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조직적·전문적 범행은 대부분 ‘범죄 수익 또는 영업규모가 매우 큰 경우’와 중첩될 가능성이 큼
 - 게임물범죄는 영세한 게임장 영업인 경우에도 업주, 중간 관리자(영업사장, 실장 등), 단순 종업원 등 조직성을 띠고, 최소한의 물적 시설(영업장, 게임기, 컴퓨터 서버 등)이 갖추어 지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조직성, 계획성, 전문성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조직적·전문적 범행을 별도의 가중인자로 규정지 않는 대신 ‘영업규모가 매우 큰 경우’를 범죄수익이 큰 경우와 함께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함이 타당

3)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 게임물범죄에서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핵심적·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자를 가중구간

에 포섭할 수 있도록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른 범죄 양형기준의 경우

- 사기범죄 양형기준 중 조직적 사기 유형에서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규정
-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중 공문서 등 위조·변조 유형에서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 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영업적 또는 조직적 유형)를 특별가중인자로 규정

▣ 다만 영세규모 영업장 업주 등은 제외될 수 있도록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있어서’ 로 한정함

4) 단순 가담 ⇒ 특별감경인자

▣ 사행성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단순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등(실무상 방조범으로 기소·처벌되는 경우도 많음) 범행 가담 정도가 특히 경미한 경우 감경구간에 포섭될 수 있도록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상당함

▣ 다른 범죄 양형기준의 경우

- 사기범죄 양형기준 중 조직적 사기 유형에서 ‘단순 가담’ 을 특별감경인자로 규정
 -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은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를,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중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유형은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10)

10) 양형인자의 정의 : 조직적 범행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를 각 특별감경인자로 규정

- 횡령·배임 양형기준, 사기, 증권범죄 양형기준 중 자본시장 공정성·투명성 침해 유형 양형기준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을 특별감경인자로 규정
- 게임물범죄의 경우 비자발적 가담 또는 적법한 업무상 지휘관계에서 예외적인 부당한 지시 등에 의한 가담 등의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조직적 사기 유형을 참조하여 ‘단순 가담’ 을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5)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특별감경인자(도박장소 개설 등,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무허가·무등록 영업)

- 당구장 업주가 대기 손님을 위해 게임기를 설치하거나, 낚시터 운영자가 손님 유치를 위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등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소규모로 이루어진 범죄는 가벌성이 약하고 실무상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약식기소·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음)
- 도박장소 개설 등, 무허가무등록 영업,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유형에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되, 불법스포츠도박 및 유통 등 유형은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실무상 예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제외함
- 양형인자의 정의
 -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작아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또는 영업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6)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불법게임물 등 유통,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불법게임물 등 유통 유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유형에서 등급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미등급 게임물,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은 실무상 대부분 사행성 영업을 위한 것이고 권고형량 범위도 이를 기준으로 설정되었음
- 다만 예외적으로 사행성과 무관한 경우(단순히 게임 배경화면을 변경하는 경우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특별감경요소로 반영함이 타당함
- 양형인자의 정의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내용이 사행성 조장과 무관하거나 환전·환전 알선 또는 재매입의 목적이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를 의미한다.

7) 사행성 영업 또는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배급 ⇒ 특별가중인자(무허가·무등록 영업 중 1유형)

- 무허가·무등록 영업 유형 중 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은 본래 신고·등록절차를 강제하기 위한 행정단속법규 위반 범죄로 사행성 조장과는 무관함 ⇒ 이를 고려하여 권고형량범위도 비교적 낮게 설정됨
 - 그런데 실무상 게임물 자체는 사행성이 없음에도 영업방식의 사행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와 같은 영업방식의 게임장에 게임물을 공급한 경우를 무허가 영업 등 유형 중 1유형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고, 이러한 경우 그 사행성이 중요한 양형인자로 고려되고 있음
 - 위와 같은 기소·처벌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실무상 사
-

례도 종종 발견되므로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양형인자의 정의

- 사행성 영업이란 무허가·무등록 게임제공업에서 게임물을 이용제공하면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 배급이란 무등록 게임제작·배급업에서 위와 같은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일반양형인자

1) 복표 발매를 중개한 경우 ⇒ 일반감경인자(도박장소 개설 등)

- ▣ 복표발매 중개(3년 이하)는 복표 발매(5년 이하)보다 법정형이 낮고, 복표 발매의 방조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범죄 행위태양을 일반감경인자로 설정

2)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일반감경인자

- ▣ 단순 가담을 특별감경인자로 하는 점, 범죄수익규모 및 실제 이득액을 밝히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성매매알선 등 유형의 예에 준하여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로 규정함이 타당함

3) 유통한 게임물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 일반감경인자(불법게임물 등 유통, 무허가·무등록 영업 등)

- ▣ 게임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을 유통한 범죄의 경우 유통한 게임물 등의 수량의 많고 적음을 양형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유통범죄는 이용제공 등 범죄의 물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양형 실무에 비하여 규범적으로 형량범위를 상향 설정함 ⇒ 수량

이 적은 경우 감경인자로 반영함이 적절함

▣ 각 유형에 따라 양형인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불법게임물 유통 등 유형 : 유통한 게임물, 사행성유기기구, 발행 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 무허가 영업 등 :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4)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일반가중인자

▣ 범죄수익규모를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곤란 등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이 적절함

5)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일반가중인자

▣ 단속 경찰관 또는 행정기관 등과 유착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식품·보건범죄와 조세범죄의 예에 준하여 일반가중인자로 규정

6) 단속대비 시설 등의 설치 ⇒ 일반가중인자

▣ 실무상 단속에 대비하여 CCTV를 설치하거나 외부에서 열기 어려운 철문 등을 설치한 경우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 사례가 다수 있음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에 준하여 일반가중인자로 규정

7)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일반가중인자

▣ 수사 과정에서 마지사장을 내세우거나 공범 상호간 역할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 증거은폐를 시도하는 경우가 잦고, 이러한 사유가 불리한 양형이유로 고려되고 있음

▣ 사기, 횡령·배임, 공문서, 식품·보건, 증권, 선거, 변호사법 등 범죄군의 예에 준하여 일반가중인자로 설정

8)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일반가중인자(도박장소 개설 등, 불법스포츠도박 등,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중 성매매알선 등 유형에서는 이를 특별가중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수익규모나 영업규모가 큰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는 점에 비추어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함이 적절함

VI. 집행유예 기준

▣ 양형인자표상의 양형요소와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기준을 참조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게임물이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대비 시설의 설치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